세무1과

2019년도 주요업무계획

성실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성실모범납세자 선발

-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「성실·모범 납세자」 선발 포상
- 납세자의 자긍심 고취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으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

□ 사업개요

- 선발근거: 「울산광역시 중구 성실・모범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(2017. 6. 5 제정)
- 선발인원: 10명(성실, 모범)
- 선정기준: 중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·법인
 - 기 준 일: 매년 1월 1일
 - 이 대상자
 - 성실납세자: 최근 3년간 구세를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법인·개인
 - 모범납세자: 최근 1년간 구세납부액이 법인은 2천만원 이상,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납세자
- 지원내용: 표창수여, 구 세무조사 2년간 면제, 관내 주차요금 1년간 면제
- 사후관리: 탈세·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 되는 때 선정취소

□ 세부실천계획

- 성실·모범납세자 선발·포상 계획수립: 2019. 1월
- 성실·모범납세자 선정: 2019. 2월
- 표창패 및 성실납세자증 수여: 2019. 3월

□ 기타사항

○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

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구금고 지정

○ 구 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「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구금고 지정 및 운영

□ 사업개요

- 지정방법: 공개경쟁
- 금 고 수: 단수금고
- 약정기간: 3년(2020. 1. 1.~2022. 12. 31.)
- 근거법규
 -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
 - 행정자치부예규 제3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
 -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제103조
 -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
- 신청자격: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중구 관내 영업점(지점)을 둔 금융기관
- 금고업무
 - ㅇ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
 - 각종 세입금의 수납. 세출금의 지급 등

□ 세부실천계획

- 금고지정 공고 및 제안서 접수: 8월
-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: 9월
- 금고지정 및 약정체결: 9월

□ 기타사항

○ 합리적인 기준 및 절차에 따른 금고지정으로 행정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

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 서한문 발송

-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『감사 서한문』 발송
- 성실납세풍토 조성과 지방세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

□ 사업개요

- 기 간: 8월(1차), 10월(2차)
- 선정기준: 정기분 재산세 200만원 이상 납기 내 납부자

(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)

- 발송대상: 1,000여 명
- 내 용: 지방세 성실납부에 대한 감사서한

□ 세부실천계획

-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: 7월
- 서한문 발송 계획 수립: 7월
- 발송대상자 선정: 8월, 10월
- 서한문 발송: 1차(8월), 2차(10월)

- 성실 납세의식 확산을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
- 성실납세자가 사회에서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

지방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세입목표액 달성

-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전 행정력 집중
- 현장중심의 철저한 세원관리로 누락세원 예방 및 세입증대

□ 사업개요

○ 목 표 액: 135,220백만원(구세 39,020/시세 96,200)

(단위: 백만원, %)

| 세목 | 별 | 연 | 도별 | 2019년 목표액(A) | 2018년 징수전망액(B) | 2017년 징수액 | 증감액 (A-B) | 증감율 (A/B) |
|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합 | | ヹ | 1) | 135,220 | 140,170 | 165,237 | △ 4,95 0 | △ 3.5 |
| | 소 | | 계 | 39,020 | 37,070 | 37,089 | 1,950 | 5.3 |
| | 재 | 산 | 세 | 31,900 | 30,150 | 29,088 | 1,750 | 5.8 |
| 구 | 등록면 | 허세(1 | 면허) | 660 | 660 | 646 | 0 | 0.0 |
| | 등록면 | 허세(- | 등록) | 3,700 | 3,560 | 4,633 | 140 | 3.9 |
| 세 | 주민서 |] (재선 | 난분) | 260 | 250 | 261 | 10 | 4.0 |
| | 주민서 |] (종업 | 원분) | 2,100 | 2,050 | 2,040 | 50 | 2.4 |
| | 과 | 년 | 도 | 400 | 400 | 421 | 0 | 0.0 |
| | 소 | | 계 | 96,200 | 103,100 | 128,148 | △6,900 | △6.7 |
| 시 | 취 | 득 | 세 | 33,400 | 36,600 | 55,452 | △3,200 | △8.7 |
| | 주민서 |](균등 | 등분) | 1,200 | 1,200 | 1,168 | 0 | 0.0 |
| | 자 동 | 차 | 세 | 19,900 | 20,300 | 20,372 | △400 | △2.0 |
| | 지 방 | 소 득 | 두 세 | 24,000 | 26,000 | 28,997 | △ 2, 000 | △7.7 |
| | 지역지 | 원 시 | 설 세 | 4,000 | 3,800 | 3,590 | 200 | 5.3 |
| | 지 방 | 교육 | 낚 세 | 11,000 | 12,500 | 15,377 | △1,500 | △12.0 |
| | 과 | 년 | 도 | 2,700 | 2,700 | 3,192 | 0 | 0.0 |

□ 세부실천계획

- 정기분 지방세 징수율 제고 총력
 - 정기분 징수목표액: 52,760백만원(전년대비 29억원 증가)
 - 주민편의 전자납부서비스 이용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
 - 인터넷 및 모바일 위택스, 인터넷 지로, CD/ATM기, ARS 전화 신용카드 납부
 - 금융기관·대형마트 및 공동주택(143곳) 전단지 홍보, 교통요지 옥외 게시대 현수막 홍보, 고지서여백 홍보, 행정복지센터 홍보 협조 등
 - 3/4분기 「현년도 체납세 2020년 이월액 최소화 계획」 강력 추진
 - 맞벌이부부, 독신세대를 위한 「야간 민원실」 운영(납기말일 3일간)
- 공평과세를 위한 비과세·감면 사후관리 추진
 - 비과세·감면 부동산 및 감면 차량 일제조사: 3월, 6월, 9월
 - 이전공공기관임직원감면, 임대주택감면, 종교단체감면, 자경농민감면 등
 - 장애인차량감면, 다자녀가구차량감면, 매매용중고차량감면
- 취득세 등 탈루 은닉 취약분야 집중조사 추진
 - 취득세 과세물건 누락 조사: 수시
 - 과점주주, 사전입주, 가설건축물, 지목변경, 상속 부동산·차량 등
 - 취득세 중과세대상 물건(고급오락장, 고급주택) 조사: 5월
 - 취득세 과세표준 등 과소신고 조사: 수시
 - 주민세(재산분, 종업원분) 신고 누락 조사: 3월~5월
- 납세자 불이익 예방을 위한 자진납부 안내
 - 건축물 신·증축, 상속 등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 발송: 수시
 - 비과세·감면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추징 사유 사전 안내: 수시
 - 주민세(재산분) 자진신고 안내: 7월

안정적 구정 추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

- 구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세입 확충
- 체계적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세워누락 방지 및 세입목표 달성

□ 사업개요

○ 목표액 39.020백만원의 달성

(단위: 백만워)

| 구 분 | 계 | 재산세 | 주민세 | 등록면허세 | 과년도 체납세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|
| 목표액 | 39,020 | 31,900 | 2,360 | 4,360 | 400 |

- 추진방법
 - 허가부서 과세대상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한 정확한 과세
 - 과세대장 연중 정비 및 감면부동산 사후관리로 세원누락 방지

□ 세부실천계획

| 세 목 | 시기 | 추 진 사 항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| 3월 | ○관내 토지 재산세대장 누락여부 전수 조사 | | |
| 재 산 세 | 4월 | ○무허가, 미준공 사전입주 건물 등 위법건축물 현장조사 | | |
| 세 건 세 | 5월 | ○ 종교·보육시설·학술연구단체 등 감면물건 목적사업사용 조사 | | |
| | 7월 9월 | ○정기분 재산세 부과·징수 추진 | | |
| 주 민 세 | 7월 | ○주민세(재산분) 자진 신고·납부안내 추진 | | |
| (재산분, 종업원분) | 8월 | ○ 연면적 330㎡초과 사업장 건축물대장 대사, 과소 신고분 과세 | | |
| 등록면허세 | 1월 | ○정기분 등록면허세(면허) 부과·징수 추진 | | |
| (면허) | 11월 | ○ 행정기관 및 각종 면허부여기관 과세누락 면허 조사 | | |
| 현년도 체납세 | 12월 | ○현년도 체납세 이월액 최소화 징수독려 추진 | | |

- 주요계획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구세입 목표액 달성
- 누락세원 및 부실과세 방지로 조세의 형평성과 신뢰성 제고

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

- 정확한 현장조사와 가격검증으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확보
- 개별주택가격의 공정성 확보로 조세부과의 신뢰성 제고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: 2019. 1. 1.~12. 31.
- 조사대상: 개별주택 17,000호(공동주택 제외)
- 기 준 일: 1월 1일, 6월 1일(연2회)

□ 세부실천계획

- 2019. 1. 1. 기준 개별주택조사 가격 산정 및 결정·공시
 -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·검증: 2018. 11월~2019. 2월
 -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가격 검증: 2019. 3월~4월
 -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: 2019. 4월중
 - 주택가격 결정·공시: 2019. 4. 30.
- 2019. 6. 1.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 가격 산정 및 결정·공시
 - 조사대상: 1. 1.~5. 31. 토지 분할·합병 및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
 - 가격산정(5월~7월),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(8월), 결정·공시(9. 30.)

- 적정가격 공시로 조세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과세표준 현실화 기여
-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에 대한 사전안내로 민원발생 최소화

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조사 추진

- 적발・추징 위주에서 지도・예방 중심의 세무조사
- 고의적인 지방세 탈루 조사 및 누락세원 발굴 중점 추진

□ 사업개요

-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계획수립
- 세원 탈루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 추진
- 정기 세무조사 선정 법인수: 35개 업체

□ 세부실천계획

-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및 조사계획 수립: 1월~2월
 - 조사법인 선정 기준
 - 최근 4년간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
 - 5억원 이상 과세물건을 취득한 법인
 - 자본금 50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100명 미만인 법인
 - 소기업·소상공인·성실기업은 3년간 세무조사 면제
- 법인 정기 세무조사(서면 및 방문조사): 3월~12월
- 지방세 취약분야 기획조사: 수시
 - 대형사업장 주민세(종업원분, 재산분) 기획 조사
 - 법인 도급으로 신축한 개인의 취득세(부동산) 기획 조사
 - 기타 지방세 취약분야 탈루·은닉세원 발굴 조사
- 추징세액 법정 과세예고 실시 및 납기내 납부 독려 실시

- 세무지도활동 강화로 지방세 성실신고납부 분위기 유도
- 지방세 취약분야 중점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

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알리미 서비스 제공

-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지방세 홍보물을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장에 발송
- 사내 게시판 및 자체 통신망 활용한 홍보로 구민만족 중심의 신뢰세정 실현

□ 사업개요

- 납세자 생활패턴에 맞춘 적극적인 지방세정 홍보로 민원 편의 제공
- 적극적인 납세자 밀착홍보로 납세자 맞춤형 공감세정 구현

□ 세부실천계획

- 시 기
 - 정 기 분: 등록면허세(면허)(1월), 자동차세(6월, 12월), 재산세(7월, 9월)
 - 신 고 분: 자동차세(연납), 주민세(재산분)(7월)
- 홍보대상: 종업원 50인 이상 관내 사업장 (85개소)
- 홍보방법
 - 지방세 홍보포스터 발송
 - 사업장 사내게시판 및 자체 통신망을 통한 홍보협조
- 홍보내용: 지방세 세정홍보 및 세목별 납부안내

- 지방세 납부편의 시책 홍보를 통한 세정 만족도 제고
- 지방세 납부기한 적기홍보를 통한 납기 내 징수율 제고

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납부 알림 서비스

- 사망신고시 상속인에게 「상속재산 취득세 신고·납부 안내문」을 배부하여 취득세 신고절차 사전안내
- 매월 상속인 전원에게 2차 상세 안내문을 발송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사전예방하여 납세자 맞춤형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

□ 사업개요

- 사 업 명: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·납부 알림서비스
- 해당세목: 상속재산(부동산, 차량, 회원권, 선박) 취득세
- 신고기한: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

□ 세부실천계획

-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·납부 안내문 제작 및 배포: 3월
- 취득세 안내문 비치: 구 민원실, 동행정복지센터(사망신고 접수시 배부)
 -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절차, 구비 서류 등 사전안내
- 취득세 2차 상세 안내문 발송: 매월
 - 상속인 전원에게 재산목록 및 신고·납부절차 상세 안내
-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1개월 이내 도래자 전화독려: 매월

- 납기 내 신고·납부 안내로 가산세 불이익 방지
- 납세자 맞춤형 세무행정 서비스로 납세편의 제공

구민과 소통하는 「지방세 콜센터」운영

- 정기분 납부기간 중 야간 및 중식시간에 구민과 소통하는 「지방세 콜센터」전담팀 운영
- 납세자 만족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행정 구현 및 세입목표 달성

□ 사업개요

- 기 간: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간 내
- 운영방법
 - 야간 및 중식시간 「지방세 콜센터」 운영
 - 방문민원 상담, 전화민원 응대
- 주요내용
 - 지방세 세무상담: 과세근거, 산출내역, 과세대상 등
 - 고지서 발송관리: 고지서 재발송 상담 및 서류 송달지 변경 신청 접수
 - 납부방법 안내: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 안내 및 카드수납 처리
 - 지방세 편의시책 홍보: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홍보

□ 세부실천계획

- 운영시기: 등록면허세(1월), 자동차세(6월, 12월), 재산세(7월, 9월)
- 운영방법

| 운영형태 | 기 간 | 시 간 | 근무인원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|
| 야간세무민원실 | 납부마감일전 3일간 | 18:00~22:00 | 1일 2명 | |
| 중식시간 | 납부기간 (해당월 16일 ~ 30일) | 12:00~13:00 | 순번제 운영 | |

- 근무시간외 납부편익 제공을 통한 주민 만족도 향상
- 다양한 지방세 납부서비스 홍보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

주택가격 열람통지문을 활용한 구정 홍보

- 주택가격 열람통지문의 뒷면을 활용하여 구정 홍보 마케팅 실현
- 구민에게 알권리 충족과 구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 기여

□ 사업개요

- 사업내용: 주택가격 열람통지문을 활용한 구정홍보
- 홍보대상: 개별주택 열람통지 대상자 17,000여 명
- 홍보내용
 - 개별주택가격 가격산정 절차안내, 구정소식
 - 시민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등

□ 세부실천계획

- 중점 홍보대상 검토 및 선정: 1월
- 개별주택가격 열람통지문 제작: 2월
- 개별주택가격 열람통지문 발송: 3~4월

- 구정주요행사 홍보와 구민의 세무행정에 대한 이해도 증대
- 구정홍보 예산절감 및 홍보 효과 극대화로 행정효율성 제고